

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

시행일: 2012. 3. 1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영어강좌 의무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2008학번 이후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의무이수 요건) ① 제2조의 적용대상 학생은 전공과목의 영어강좌 3과목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. 단, 편입학생은 전공과목의 영어강좌를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.

② 전공과목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전공기초 교과목을 의미하며, 전공기초 교과목의 경우 2012학년도 이후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.

제4조(미이수자의 처리) 영어강좌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유예자로 처리한다.

<부칙>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칙>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